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217호 2019년 7월 5일(금)

공 고

- 공인 및 전자이미지 등록사항 공고 2

공 고

「속초시 공인 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5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등록 사유

— 속초시하수도사업소지출원인 공인 및 전자이미지 신규 등록

2. 공인명 및 인영 : 등록 2개

구분	공 인 명	인영	규격	사용일	비고
등록	속초시하수도사업소 지출원인		2.0×2.0cm	2019. 7. 5.	
등록	속초시하수도사업소 지출원인		2.0×2.0cm	2019. 7. 5.	전자 이미지